

## 오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06년 9월 14일 규칙 제583호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오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계약심의 요청)** 계약담당자가 조례 제7조에 의거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.

**제3조(회의록)**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1. 회의 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
3.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
4.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
5. 의결사항
6. 그 밖에 중요사항

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등)**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 착공 전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, 해당 공사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주민참여감독자 근무관리)** 공사감독공무원은 주민참여감독자의 현장근무사항 등을 감독·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주민참여감독자 현장 감독기간)** ① 주민참여감독자가 감독대상공사 준공시까지 현장에서 감독하는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공사의 성질·여건상 감독일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은 그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.

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·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.

오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**제7조(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조서)** 주민참여감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8조(기타사항)**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오산시 계약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**부칙**

- 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규칙의 시행 이전에 계약한 공사·물품·용역 등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.
- ③(다른 규칙의 폐지) 「오산시계약심의회운영규칙」은 이를 폐지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### 계약심의(자문) 요구서

의 안 번 호	
안 건 명	
심 의 ( 자 문 ) 요 구 사 항	
관 련 법 규	
<p>첨 부 : 심의안건 1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와 같이 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(자문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안건제출자 부서명 : 직 위 : 성 명 : (인)</p> <p>오 산 시 장 귀하</p>	

오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[별지 제2호서식]

### 주민참여감독자 현장감독일지

일자	감독사항	주민 참여 감독자확인	감독공무원 확인	비고

오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[별지 제3호서식]

##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조서

공사감독관 경유	
소 속	
직급(위)	
성 명	

공 사 명 :  
사업장위치 :  
도 급 자 :

본인은 상기 공사의 주민참여감독자로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 위촉받아  
  년    월    일부터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 기간 중    회에 걸쳐 감독한 결과,  
본 공사가 설계도서 및 제시방서에 의거 시공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  년    월    일

주민참여감독자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

오 산 시 장 귀하

